

부산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2나61649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2나6164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0가단31239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도, 담당변호사 안형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범준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임경윤

변론종결 2022. 11. 16.

판결선고 2022. 12. 14.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0가단31239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각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 및 제1, 2예비적으로는, 144,326,3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제3예비적으로는 61,854,1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항소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제2예비적 청구와 망 D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채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제3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제2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망 D에게 대부사업자명의를 불법으로 대여하여 망 D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초과 지급받은 144,326,359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망 D에게 대부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는 피고의 명의 대여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5621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제3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대여금채권자가 아니라면 망 D이 대여금채권자라 할

것인데, 망 D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상속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 상속분에 해당하는 61,854,153원(= 144,326,359원 x 3/7)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망 D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제3예비적 청구도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제2, 3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제2, 3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호원, 판사 이은명, 판사 정일예